
안전보건교육교재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2021. 1.



K I S I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한국산업안전관리원

TEL: 1588-8393 (代) FAX: (031)414-0725

안전보건교육일지

2021 년 1 월 일

결
재

담당

검토

승인

교육구분

1. 신규채용자 교육 2.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3. 특별안전보건 교육
4. 정기교육 5. 관리감독자 교육 6. 기타 ()

교육인원

구 분

계

남

여

비 고

교육대상 근로자수

교육구분

교육 과 목

교육방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재준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교육목적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숙지 및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
육
내
용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1-1. 물질안전보건자료 개정배경
 - 1-2.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심사 절차
 - 1-3. 21년 1월 16일 ~ 무엇이 달라지는가?
 - 1-4.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 1-5.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심사
 - 1-6. 국외제조사
2. 지게차
 - 2-1. 지게차 조종교육
 - 2-2. 지게차 안전장치
3. 안전보건계획 수립 규정

※ 교육평가 및 의견

강 사 명

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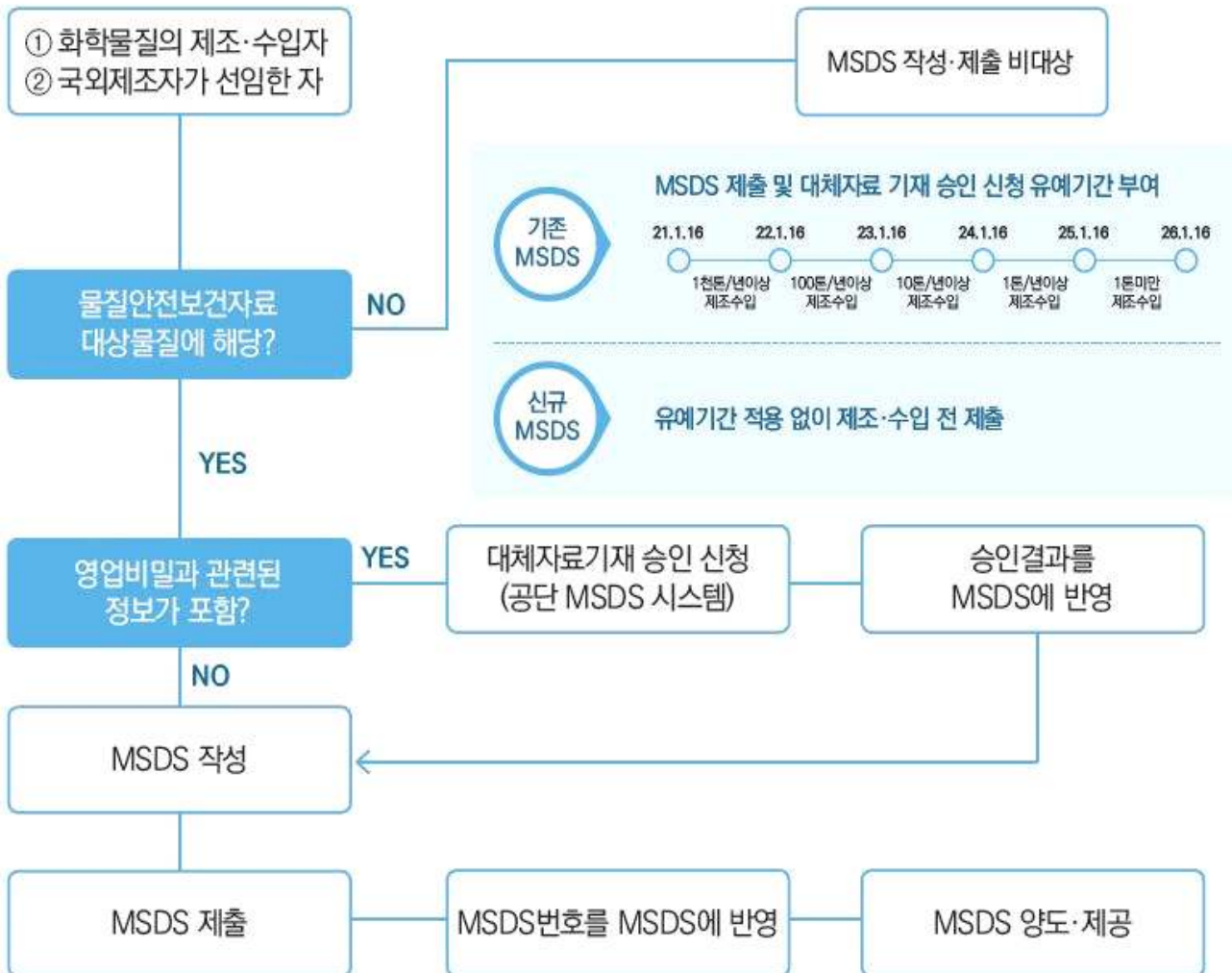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개정배경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응급조치 요령, 취급 방법 등을 비롯한 15가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은 하지 않되, 직접 취급함으로써 MSDS작성 의무가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발생
- ◎ 대상화학물질 용어만으로는 규제대상 및 목적을 유추하기에 어려우며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음.

2)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 절차



※ 단, 연구개발용 물질의 경우 자료의 제출만 제외되므로 MSDS작성 및 대체자료기재 승인 신청은 해야함

3) 21년 1월 16일 ~ 무엇이 달라지는가?

1. MSDS 작성주체와 기재항목이 변경됩니다.

◎ MSDS 작성주체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MSDS 작성주체	대상화학물질 양도·제공자	①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제조·수입자 ②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 MSDS 구성성분 및 함유량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MSDS 기재항목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구성성분 중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2. 작성한 MSDS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전에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아울러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내 유해·위험한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공단에 함께 제출

▶ 미제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출이 완료되면 MSDS에 고유 번호가 부여 됩니다.

3. MSDS 구성성분 중 영업비밀인 사항(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고 싶은 경우 별도로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MSDS내 영업비밀인 사항(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기재하려는 경우 “비공개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작성·제출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로 그 결과를 MSDS에 반영

▶ 승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국외제조자가 국내수입업체를 거치지 않고 MSDS를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승인신청을 하고 싶은 경우, 국내수입자를 갈음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선임된 자로서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하거나 MSDS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MSDS를 제공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관련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 113조

- ▶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 ▶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 ▶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제출 등)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1. MSDS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2. MSDS 제출 주체

- ①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 ②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3. 제출서류 목록

- 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②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MSDS에 모든 구성성분이 기재된 경우 생략가능)
※다만, 국외 제조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운 수입품의 경우 산안법 시행규칙[별지 제62호 서식]“화학물질 확인 서류”로 대신하여 제출

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적용제외대상

[법적근거] 산안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것

-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등 15가지 타법에 따른 것 등
- ②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
- ③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 ④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자료의 제출만 제외되므로 MSDS 작성은 해야함.

5. MSDS를 제출하는 방법은?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비공개 정보 승인시스템(이하“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가능

※ 주소 : <http://msds.kosha.or.kr>

6. MSDS 제출 시기



① 기존작성 MSDS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에 해당하는 제품의 연간 제조·수입량 별로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

② 신규작성 MSDS 경우

21년 1월 16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제출

③ MSDS 제출 이후 아래의 변경사항이 발생시, 이를 반영하여 MSDS를 다시 제출

- ① 제품명(구성성분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
-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산안법 시행규칙 제141조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
- ③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7. MSDS 제출시 주의사항

- ① MSDS에는 자료의 출처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 ② 영업비밀인 사항을 대체자료로 기재하를 경우, 먼저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 후 그 결과를 반영한 MSDS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③ MSDS 제출 시, 제품명, 제조자/공급자 정보, MSDS제정일자 등을 기재해야 하며 48가지 용도분류체계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8. MSDS 양도·제공 시 주의사항

- ① MSDS를 양도·제공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출 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MSDS에 반영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②MSDS 시스템을 통하여 MSDS를 양도·제공 가능 합니다.

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체자료 심사

1. MSDS 대체자료 기재 심사

MSDS 내 영업비밀인 사항(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대체명칭 및 대체 함유량)로 기재하려는 경우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의 "비공개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작성·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MSDS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전 승인 시 ①비공개 타당성 ②대체자료의 적합성 ③MSDS의 적정성 확인

2. MSDS 대체자료 기재승인 신청 시기

MSDS 제출 전

MSDS 제출 시기와 동일하나 제출 전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거쳐야 MSDS상에 대체 자료로 기재 가능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http://msds.kosha.or.kr>

3. MSDS 대체자료 기재 승인 처리 절차



4. 대체자료의 정보 제공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6) 국외제조자

MSDS, 구성성분 정보, MSDS 대체자료 기재승인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국내수입업체를 거치지 않고 제출하고 싶은 경우 국외 제조자가 국내 수입자를 갈음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조건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법인인 경우 그 소재지를 의미)를 가진 자

2.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수행 가능 업무

- ①MSDS 작성·제출
- ②산안법 시행규칙[별지 제62호서식]화학물질 확인서류의 제출
- ③대체자료 기재승인 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승인, 이의신청 등

2. 지게차

1) 지게차 조종교육

1. 신설배경

사고사망 발생 빈도가 높은 전동식 지게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조종자격을 갖춘 사람(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또는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확인하고 작업을 하도록 규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 신설(별표 1, 4의2호 신설)되어 기존의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지 않는 지게차인 경우에도 지게차 교육을 이수한 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구분	작업명	작업범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신설]	4의2. 지게차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는 작업	지게차를 취급하는 업무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 운전기능사의 자격 2)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지게차 조종자격 시행 시기 유예와 유경험자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지게차 조종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 자격을 인정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할 예정.

<현행>	<개정(예정)>
<p><조종자격 시행시기></p> <p>▪ '21.1.16.부터 시행</p>	<p><조종자격 시행시기></p> <p>▪ '21.7.16.부터 시행(6개월 연장)</p>
<p><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p> <p>▪ ①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②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p> <p>▪ ①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②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유경험자(운전면허+3개월 조종경험)로서 안전보건공단의 사이버교육(2시간)을 이수한 사람('21.7.15.까지)</p>

2. 교육과정 (특례규정)

◎ 교육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지게차를 조종하려는자

※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포크, 램(ram) 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 시키는 마스트(mast)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지게차



◎ 신청자격

사업장에서 지게차 조종작업을 3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제외)를 소지한 자

◎ 이수방법 및 기간

한국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이러닝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이수(2시간/무료)

이수기간 : 2021.07.15. 까지 이수

◎ 교육신청 및 방법



교육대상 신청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지게차 3개월 이상 유경험 경력증명서(붙임)를 보관하고
→ 교육 이수자는 이수증을 사업장에 제출

2) 지게차 안전장치

1. 안전장치 신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 제2항이 신설되어 지게차 작업중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신설]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① 생략 ②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 후진경보기

후진경보기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험을 광선이나 음향 따위를 이용하여 알리는 장치

◎ 경광등

경광등은 긴급함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붉은빛을 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후방감지기

후방감지기는 후방을 감지하여 지게차 후미에 사람 또는 물체가 근접할 경우 지게차가 정지하거나 거리에 따라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적으로 주의를 주는 장치를 말하며 후방감지카메라(모니터포함), 후방감지센서, 모션감지센서 등이 해당 됩니다.

후진경보기 및 경광등(예시)



경보기(음향)



경보기(광선)



경광등

후방감지기(예시)



후방감지카메라(모니터포함)



후방감지센서



모션감지센서

2. 시행시기

2021년 1월 16일 ~

3. 안전보건계획 수립 규정

1)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

1. 개정배경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 등 사업주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을 행위자로서 처벌하고 있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현장소장·공장장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만 행위자로서 처벌받고 법인의 대표자는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그러나 기업의 안전·보건 중심의 경영시스템은 기업 대표자의 인식 및 안전보건경영정책에 크게 의존하므로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할 필요가 있음

2. 개정내용

<산업안전보건법>

- ◇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대표이사*가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별 사업장 단위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시행

- 3. 대상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의 순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 4. 시행시기 - 2021. 1. 1.부터 시행
- 5. 처벌규정 -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본 자료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인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

- 끝 -